

#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년 1월 13 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자원봉사전문가	시간선택제임기제 "라급"	1명	채용일로부터 1년 (주35시간)	주민자치국 민관협치과 (자원봉사센터)	- 자원봉사단체 운영·관리 - 자원봉사센터 홍보 및 홍보단 운영 - 홈페이지 운영·관리 등 -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

※근무기간은 근무성적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.

## 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### 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1) 지역 · 연령 ·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2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
- 3)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채용직급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(8급 상당)	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채용예정 직무 분야 : 자원봉사 분야 ※ 채용예정 직무 분야 경력 인정범위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학교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

※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함

※ 유의사항

- 1)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
- 2)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,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- 3)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

##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시간 : 주5일 35시간(1일 7시간 근무)

-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로 하되, 08:00~19:0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
- 식사시간(1시간)은 근무시간에서 제외
-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(조기출근, 야간근무 등) 및 주말·휴일 근무 가능

※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○ 보 수 : {2022년도 연봉 하한액 × (35시간/40시간)} ※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<별표13>

구 분	하한액 (단위:천원)
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(8급 상당)	34,877 (39,859×35시간/40시간)

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시간외수당,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-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 2. 9(수) ~ 2. 11(금) <3일간 09:00~18:00, 중식시간제외>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(대리접수 가능, 팩스·인터넷 접수 불가)
  - ※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
  - ※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  - 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접수처 : 서대문구청 민관협치과 자원봉사팀 (서대문구 연희로 247 제3별관 6층)
 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
(\*수입증지 판매처 : 서대문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, \*수입증지 가격:5,000원)
  - 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# 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서류전형	2022. 2. 14.(월) 예정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2. 2. 15.(화) 예정	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
면접시험	2022. 2. 17.(목) 예정	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2. 2. 18.(금) 예정	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### 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
 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재공고하며, 재공고를 통한 추가 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.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# ○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하되,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  - ※ 평정요소 : 1.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2.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3.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4.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5.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(미흡)"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"하(미흡)"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(최고 득점자 합격, 차상위 득점자 예비합격자로 선정 가능)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단,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」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음 (법제처 유권해석, ' 14.12.22)

## 6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(별첨 서식 1)

- 응시수수료 : 5,000원(수입증지 판매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)
-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접수처(민관협치과)에 제출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

② 이력서 1부(별첨 서식 2)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③ 자기소개서 1부(별첨 서식 3)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첨 서식 4)

⑤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(별첨 서식 5)

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(별첨 서식 6)

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.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(단, 최종 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
- 해당 기관(회사)의 관인(법인 인장)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 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(별첨 서식 7) 추가 제출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
※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
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 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

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○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(www.sdm.go.kr)에 고시·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
○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서대문구청 민관협치과 담당(임수현 ☎ 02-330-1282)